
일반논문

www.kci.go.kr

19세기 중반 영국의 대조선 문호개방정책 기원

— 영·러 대결과 조·청 속방관계와 관련하여

한 승 훈*

[초 록]

본 논문은 19세기 중반 동아시아 주재 영국외교관이 모색한 대조선 문호개방정책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크림전쟁이 발발하자, 영국 함대는 1854년 8월 말에 프랑스와 공동으로 캄차카 반도의 러시아 기지를 공격하였다. 그와 동시에 홍콩 총독 보어링은 외무부 장관 클레멘트에게 유럽 열강이 참여하는 대조선 문호개방 정책을 외무부에 제안하였다. 1865년 주청 영국공사 웨이드도 러시아가 조선과 육로 통상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럽 열강과 공동으로 조선의 개방을 구상하였다. 영국외교관들이 조선의 문호개방을 구상하게 된 이유는 러시아의 독점적인 조선 진출을 차단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상업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유럽 열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선의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주제어: 보어링, 웨이드, 올콕, 크림전쟁, 캄차카, 조선의 문호개방, 영러 대립, 그레이트 게임, 조청 속방 관계

John Bowring, Thomas Wade, Rutherford Alcock, Crimean War, Kamchatka, Korea's Open-Door, Anglo-Russian Confrontation, Great Game, Korea-Qing Tributary Relation

문화개방을 구상함으로써, 조선을 열강의 이익이 균점되는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조선은 청의 속방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영국은 조선정부의 통치권 행사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영국외교관들은 청으로부터 조선이 속방이긴 하지만 내정과 외치를 자주적으로 맡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영국은 조선을 실질적인 독립국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 머리말

영국외무부는 1884년에 내부 회람용으로 두 권의 조선 관련 기밀문서집을 편찬하였다.¹⁾ 이들 문서집에는 영국이 제1차 조영수호통상조약(1882; 이하 제1차 조영조약)을 거부하고, 1883년 11월에 제2차 조영수호통상조약을 관철시키는 과정에 관한 보고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과 영국이 조약 체결에 임하는 방침과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이 기밀문서집들은 각각 4권과 5권에 해당한다. 전사에 해당하는 1, 2, 3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이다. 실제 3권에는 제1차 조영조약 체결, 임오군란과 제물포조약, 그리고 주일영국공사 파크스(Harry Parkes)가 박영효, 김옥균과 대담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권과 1권에는 주일 영국외교관 사토우(Earnest Satow)가 개화승 이동인과 대담한 내용과 관련한 보고서들이 실려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보자면 1~5권 전체는 영국이 조선과 조약 체결을 모색하는 과정을 담은 기밀문서집으로 추측하기 쉽다.

그런데 3권에 비해서 1, 2권에는 조선 관련 문서가 소략하다. 게다가

1) *Correspondence of Respecting the Affairs of Corea. Part IV, Confidential. 4943, March 1884. Correspondence of Respecting the Affairs of Corea. Part V. Confidential. 4995, November 1884.* 오늘날 영국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 in UK)에서 분류한 문서철 번호는 각각 FO 405/33, FO 405/34이다.

1, 2, 3권의 제목에는 ‘조선’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문서집들의 제목은 ‘러·청 조약(쿨자 지역)²⁾에 관한 왕복 서신’이다.³⁾ 그 문서집에는 주로 청국의 서북쪽 국경에 위치한 이리(伊犁) 지역을 둘러싼 러시아와 청국의 대립에 관한 보고서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왜 영국외무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러·청 국경 분쟁과 조영조약에 관한 문서철을 하나의 권호 체계에 두었을까? 그 이유는 러·청 국경 갈등이 러시아의 조선 침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영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선과의 조약 체결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외무부가 조영조약을 다룬 4권의 첫 장에 “3권. 러·청조약(쿨자 지역) 관련 서신의 속편⁴⁾”이라고 서술한 이면에는 영국 측 입장에서 러·청 국경 분쟁이 조영조약 체결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관념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영국의 대조선정책 기원에는 러시아의 진출과 관련해서 동아시아 국경의 갈등이 자리해 있었던 것은 아닐까?⁵⁾ 19세기 중반을 전

2) 이리(伊犁) 지역

3) 1권 : *Correspondence of Respecting the Russo-Chinese Treaty (Kuldja Territory) Part I, Confidential. 4521, Noverber, 1881.*

2권 : *Correspondence of Respecting the Russo-Chinese Treaty (Kuldja Territory) Part II, Confidential. 4595, March 1882.*

3권 : *Correspondence of Respecting the Russo-Chinese Treaty (Kuldja Territory) Part III, Confidential. 4738, February 1883.*

오늘날 영국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 in UK)에서 분류한 문서철 번호는 각각 FO 881/4521, FO 881/4595, FO 881/4738이다. 다만 영국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는 3권의 제목을 *China & Corea & Russia: Corres. Russo-Chinese Treaty. Kuldja Territory*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1~5권의 기밀문서철을 함께 봐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문 참조. 한승훈(2016), 「고립정책과 간섭정책의 이중주 - 조일수호조규에 대한 영국의 인식과 대응」, 『역사비평』 114, 역사문제연구소, pp. 75-76.

4) FO 405/33의 1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In continuation of Part III, “Correspondence of Respecting the Russo-Chinese Treaty (Kuldja Territory)”>

5)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구도가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확대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후로 러시아는 아무르강, 사할린 등으로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국경에서 청국, 일본, 조선과 갈등을 빚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진출을 자국의 상업적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사안으로 간주하였던 영국은 간섭정책을 통한 개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⁶⁾ 이에 영국은 자신들이 만든 질서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으로 러시아의 남하에 대응하고자 하였다.⁷⁾

하지만 영국의 입장에서 조선은 공동으로 러시아의 진출을 저지하기에 어려운 국가였다. 조선은 청국, 일본과 달리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다. 조선은 청국의 속방임을 밝혔지만, 청국은 1870년대 전반까지 내치와 외정에서 조선의 자주를 인정하면서 조선의 대외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 더욱이 조선은 외적의 침략을 방어할 능력이

연구 참조. 최문형(2007),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 침략』, 지식산업사.

- 6) 19세기 영국의 외교정책 기조는 고립정책(Isolation Policy)과 이에 기반을 둔 간섭정책(the policy of intervention)이었다. 영국은 상업상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립정책을 유지하였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입을 통해서 간섭하였다. 간섭과 불개입의 사이에는 정세 인식과 이에 따른 정책 형성과정, 그리고 정책을 실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고민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영국의 고립정책과 간섭정책에 관련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김현수(1994), 「영국의 외교정책 - 위대한 고립책(Splendid Isolation Policy)」, 『西洋史論』 43-1, 한국서양사학회; 김현수(2001), 「19세기 영국 외교정책의 근원 - 캐닝 외상의 정치·경제·외교관(觀)을 통해 본 대안의 삶」, 『현상과 인식』 25-1,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7) 아리기와 실버는 그람시의 헤게모니(hegemony) 개념을 이용해서 세계 패권 국가의 지배는 자국의 정책이 종속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지도력’에 의해서 발휘되며, 이를 통해 패권 국가는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확대시킨다고 보았다. 지오나비 아리기·비벌리 J. 실버 외 지음, 최홍주 옮김(2008), 『체계론으로 보는 세계사』, 모티프북, 56-64쪽(원제 : Arrighi, Giovanni, Silver, Beverly J., Ahmad, Iftikhar (1999), *Chaos and governance in the modern world syste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한승훈(2015), 「19세기 후반 朝鮮의 對英정책 연구(1874-1895) - 조선의 均勢政策과 영국의 干涉政策의 관계 정립과 균열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pp. 14-16. 아리기와 실버의 논의 내용은 위 논문의 각주 31에서 재인용.

없는 국가로 알려져 있었다. 조선이 러시아를 비롯한 특정 국가의 침략과 독점적인 지배를 당할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영국이 조선과 조약 체결을 모색한 기원에는 러시아의 진출로 초래된 동아시아의 국경문제와 조·청 속방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이 추진한 대조선정책의 기원을 밝히는 연구는 동아시아 국경문제와 조·청 관계가 갖는 의미에 거의 주목하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는 영국 선박의 조선 해안 진출과 통상요구에 집중되어 왔다.⁸⁾ 19세기 우월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상 무역을 장악한 영국의 동아시아 진출에 주목한 것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선박의 출현에만 주목하지 않았다. 1833년에 동인도회사의 중국무역 특허권이 폐지되고, 아편전쟁을 거치면서 영국이 정부 주도로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한 사실을 밝혔다. 영국의 대조선 정책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국 정부, 구체적으로는 외무부가 지향했던 바를 확인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아시아에 무관심한 런던의 외무부를 대신해서 사실상 동아시아 정책을 주도한 이들은 현지 외교관이었다. 그들은 주로 청국과 일본에서만 근무하면서 현지 전문가로 거듭났다. 동아시아에서 축적된 영국외교관의 경험이 이후 대조선 정책으로 구현되었던 것이다.⁹⁾ 즉 19세

8) 金洪烈(1983), 『初期 韓英交涉의 展開過程』, 『史學志』 17, 1983, 단국사학회.

9) 대표적 인물은 초대 조선공사를 역임한 파크스이다. 그는 아편전쟁 직후인 1843년부터 사망하는 1885년까지 40여 년 동안 청국과 일본에서 외교관을 수행하면서, 영국이 동아시아에 불평등조약체제를 관철시키는데 앞장을 섰던 인물이었다. 한편 1875년 7월 외무부에 러시아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거문도 점령을 건의하기도 하였으며, 1882년 제1차 조영조약의 비준을 거부하고 이듬해 제2차 조약의 체결을 주도하였다. 특히 파크스가 초안을 작성한 제2차 조약은 영국이 청국과 일본에 관철시킨 조약의 내용을 집약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외교관으로 40년의 경험이 묻어 있는 조약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갑신정변이 발발하자 파크스는 외무부에 거문도 순찰을 건의하였으며, 청국과 일본의 외교적 중재를 주도함으로써 러시아의 진출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파크스에 대해서는 다음 저서 참조. 김현수(2011), 『해리

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 주재 영국외교관이 구상한 대조선 정책을 밝히는 연구는 당시 조선을 둘러싼 대외정세를 확인하고, 나아가 조선이 문호개방을 통해 마주했던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중반 현지 영국외교관들이 동아시아 국경 문제와 조·청 속방관계를 통해 대조선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국외교관을 대상으로 한만큼 그들이 본국 외무부 등과 수발신한 외교문서를 주요 사료로 다룰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조선왕조실록과 외국인의 조선 방문 기록에서 볼 수 없었던 영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시기는 영국이 조선 관련 외교문서를 별도 범주로 분류하거나 기밀문서철로 만들지 않았다. 그렇기에 1882년 12월에 영국외무부 사서 허츨렛(E. Hertslet)이 작성한 조선 관련 각서(Memorandum Respecting Korea)를 활용하고자 한다.¹⁰⁾ 이 각서에는 1854년부터 1882년까지 동아

S. 파크스: 대영제국의 동아시아 외교 주역』, 단국대 출판부.

- 10) 본래 이 각서는 영국이 임오군란으로 촉발된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 특히 조선이 청국의 속방인지의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자국이 조약을 체결한 조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허츨렛은 임오군란 직후 조선 관련 보고서만을 각서의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영국이 1854년 이후 조선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관심을 보인 보고서들을 발췌해서 각서를 작성하였다. 즉 허츨렛의 각서에는 영국이 조선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구상하는 역사적 과정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현재 허츨렛 각서는 영국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in UK)에서 FO 881/4695로 분류되어 소장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편, 『近代韓國外交文書』 제5권 조영수호통상조약(2012, 동북아역사재단)의 pp. 820-844에 수록되어 있다(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내 『동북아역사넷』의 근대한국외교문서에서 해당 권에 수록된 문서의 원문 탈초본 제공). 본 논문에서는 국내 연구자들을 위해서 『近代韓國外交文書』에 수록된 자료의 쪽수를 기입하였다(이하 『近代韓國外交文書』로 약칭함).

다만 『近代韓國外交文書』에는 FO 881/4695에 서술되어 있는 문서별 날짜가 누락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FO 881/4695를 참조해서 문서의 날짜를 넣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시아 주재 영국외교관들과 영국외무부가 조선 정세를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 실현해 가는 과정을 담은 문서들이 발췌되어 있다. 영국이 정부 차원에서 조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을 구상화하고 실현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이 정부차원에서 조선과 정치적·상업적 관계 수립에 대한 고민을 처음 시작한 1854년을 기점으로 글을 전개할 것이다.¹¹⁾ 그리고 메이지 유신과 서계문제로 촉발된 조일 갈등이 시작하는 1868년 이전으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영국의 대조선 문호개방 구상의 시작

2.1. 크림전쟁과 홍콩총독 보우링의 대조선 문호개방 제안

1854년 8월 25일, 청국 주재 영국 무역감독관이자 홍콩 총독이었던 보우링(Sir John Bowring)은 본국 외무부 장관 클라렌튼(4th Earl of Clarendon)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의제는 조선에 관한 것이었다. 보우링은 조선을 “심각하게 쇠퇴하고 비참한 상태(a state of great degradation and misery)”로 규정하였다.¹²⁾ 그가 조선을 비참한 국가로 묘사한 근거는 라틴어로 작성된 편지 사본이었다. 그 편지의 작성자는 조선인이었다. 보우링은 그 조선인이 바티칸의 해외 포교성성(布教聖省; the Propaganda)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유럽을 방문했으며, 현재 조선으로 돌아갔다고 소개하고 있다.

보우링이 첨부하였다는 조선인의 라틴어 편지에 대해서는 사료적 판

11) FO 881/4691, “The question of establishing political and commercial relations with Korea first arose in 1854.”, 『近代韓國外交文書』, p. 820.

12) Bowring to Clarendon, No.122, August 25, 1854, 『近代韓國外交文書』, p. 820.

단이 요구되는 바이다. 조선인 천주교 신자로서 유럽을 방문한 사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³⁾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우링이 그 편지를 인용한 이유이다. 조선에서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진행되었던 시점이기에, 그는 조선에 기독교의 자유를 획득해야 한다는 논지로 그 편지를 인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보우링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의 조선 침략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러시아 정부가 오랫동안 야망을 갖고 탐욕스러운 눈으로 조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은 믿을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해상에서 러시아 함대의 존재, 아무르 강 이남으로 움직임, 그리고 최근 사할린에 기지를 설치하였다는 소식 등은 조선을 고려해 본다면 서로 연관이 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¹⁴⁾

1849년 1월 러시아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무르 강과 오르크해 연안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¹⁵⁾ 네벨스꼬이 탐험대는 아무르 강 하구와 사할린 및 인접 해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1850년 아무르강 하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였으며, 이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캄차카에 군사총독부를 설치하고, 1853년에 아무르 지방과 사할린에 군 초소를 두었다.

13) 편지의 작성자는 김대건과 함께 마카오에서 신학교를 다닌 최양업 신부로 추정된다. 다만 최양업 신부가 유럽을 다녀갔다는 기록이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14) 앞의 사료, p. 820,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the Russian Government has been long looking with an ambitious and covetous eye upon the Korean territory, and that the presence of the Russian fleet in these seas, the movement down the River Amoor, and the depôt lately established in Sagalien, have been co-operative to view upon Corea."

15) 이원종(2005), 「러시아의 극동진출과 중-러 국경획정과과정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4, 동북아역사재단, pp. 175-177.

그런데 유럽에서 크림전쟁이 발발하였다.¹⁶⁾ 크림전쟁이 동아시아에 전 해지자 1854년 5월 홍콩의 영국총독부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대비 태세에 돌입하였으며, 프랑스와 함께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희츠크 해 연안과 캄차카의 러시아 기지를 격파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크림전쟁을 계기로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권에 있는 청국이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동시베리아 총독 무라비요프도 1854년 5월에 러시아 선단을 이끌고 아무르 강의 원정 탐험을 실시하였다. 크림전쟁의 여파로 동아시아에서는 영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었던 것이다. 결국 1854년 8월 29일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함대는 캄차카 반도로 진격하면서 러시아와 전투에 돌입하였다. 즉 보우링이 러시아의 조선 침략설을 제기한 1854년 8월 25일은 영국과 프랑스 함대의 캄차카 출동에 따른 영·러 간에 일촉즉발의 긴박한 위기가 조성되었던 시점이었던 것이다.

러시아의 조선 진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우링이 제시한 대안은 무엇이였을까? 바로 조선의 문호개방이었다. 그런데 보우링은 ‘상업적 계획’에 따라서 조선을 개항시켜야 할 주체로 유럽 열강을 상정하였다. 영국에 의한 단독 실행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왜 보우링은 영국의 단독이 아닌 유럽 열강이 함께 조선과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 보우링은 특별히 이유를 밝힌 바는 없다. 당시 영국이 프랑스와 함께 캄차카 지역을 공격한 사실에서 보건데, 크림전쟁의 연장선에서 유럽 열강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1860년대 중반 이전까지 영국은 청국과 조약을 체결한 타 유럽 국가들과 경쟁 또는 갈등보다는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청국에서 확보한 이익을 균점하는 정책을 세웠다는데 있다.¹⁷⁾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영국은 러시아의 독점적 진출

16) 크림전쟁 당시 캄차카 반도에서 진행된 영국·프랑스 연합함대와 러시아 함대의 전투에 대해서는 최문형(2007), pp. 79-91 참조.

17) 이삼성은 ‘제국주의 카르텔’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19세기 중반부터 약 100년간

보다는 모든 유럽 열강 사이에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이익의 균점이 실현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조선의 문호개방을 추진하였던 것이다.¹⁸⁾ 이에 보우링은 클라렌튼에게 조선과 조약 체결을 건의하면서, 전권대사직을 자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¹⁹⁾

보우링은 외무부 장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선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서술하였다.

조선의 인구는 대략 1,000만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의 수도인 서울에는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략) 본인은 조선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입품으로 무명 옷감이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외국인과의 모든 교류를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이 일상적으로 입는 옷은 비단, 면화 그리고 아마를 재료로 하며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집니다. 모직 옷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선은 옷으로 만들 정도로 질긴 종이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조선산 종이가 - 인용자) 판매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략) 왕실

의 시기 동안 동아시아 제국주의의 시대구분을 실시하였다. 그중 첫 번째 시기인 1840년부터 1860년대 중반까지를 영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카르텔이 형성되었으며, 당시 영국은 서구 열강에게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대해서 공동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역할과 권리를 공유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보았다. 이삼성(2008), 『동아시아 제국주의의 시대구분』, 『국제정치논총』 48-3, 한국국제정치학회, pp. 58-71.

- 18) 유럽 열강이 공동으로 조선의 문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1875년 7월에도 제기되었다. 파크스는 조일 갈등의 격화와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거문도 점령과 조선의 문호개방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는 문호개방의 주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유럽 열강들이 그 국가(조선 - 인용자)를 개항시키는 일반적인 단계를 밟게 된다면, (조선이 ; 필자) 한 국가의 영향력 또는 보호 아래 놓이는 것 보다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Parkes to Derby, Yedo, July 20, 1875, Telegraphic No.29, 881/2700; 한승훈(2015), pp. 53-54 재인용) 즉 파크스는 러시아가 조선에 단독으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보다, 유럽 열강이 공동의 이익을 균점하는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 19) 앞의 사료, p. 820.

을 넘어서는 모든 권력과 영향력을 양분하는 두 개의 주요한 파당 (봉당 - 인용자)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의 귀족층은 압제적이며, 백성들은 억압을 받습니다. 교류는 어렵습니다. 열악한 도로와 항행할 수 있는 하천은 거의 없습니다. (중략) 귀금속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불은 중국의 화폐로 이루어집니다.²⁰⁾

보우링은 조선과 통상 관계를 맺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정보는 조선 전체 인구 및 서울의 인구, 면직물의 수요 현황, 주요 생산품, 통용되는 화폐까지 다양하였다. 특히 면화와 모직에 대한 조선 내부의 수요를 확인함으로써, 영국산 주요 제품의 조선으로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가내수공업 여부를 확인한 이면에는 조선에서 영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보여 진다.

보우링은 조선의 권력 구조 및 계급구조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였다. 그는 왕실을 뛰어넘는 파당의 존재를 보고서에서 언급하였다. 조선의 세도정치를 설명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어서 그는 양반의 압제 속에서 백성들이 억압을 받고 있으며, 조선에서는 외국인과의 교제를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하였다. 보우링의 보고서는 조선에 관한 정보의 진위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백지상태와 다름없었던 영국외무부에 조선을 각인시키는데 충분하였다.

20) 위 사료, pp. 820-821, “The population is believed to amount to about 10,000,000 souls, of which 200,000 inhabit Seoul, the capital city …… I am informed there would be a considerable demand for white cotton goods were their importation allowed, but all communication with foreigners is most strictly prohibited. The ordinary dresses of the people are made of home-manufactured silk, cotton, and flax. Woollen garments unknown. Corea is celebrated for the production of a paper strong enough for garments, which I have seen exposed for sale in China. …… Two principal factions are said to divide all authority and influence beyond the Court circle. The Nobles are oppressive, and the people trodden down. Communication are difficult: bad roads and few navigable rivers. …… The precious metals are rarely seen, and all payments are made in Chinese cash.”

하지만 외무부 장관 클라렌드에게는 보우링의 보고가 부족해 보였다. 클라렌드는 다음과 같이 보우링에게 답변을 보냈다.

조선, 조선의 생산품, 그리고 인구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귀하가 조선과 조약 체결을 계획하였을 때, 조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련한 어떠한 의견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매우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²¹⁾

클라렌드는 조선 관련 정보가 빈약하다고 지적하였다. 조약 체결을 통해 영국이 얻을 이익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뜻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동감하였다. 즉 크림전쟁과 러시아의 원동진출이 조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보우링의 견해에 동조하였던 것이다. 이에 클라렌드는 보우링에게 조선과 조약 체결을 위한 전권을 부여하였다.²²⁾

그러나 보우링은 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1855년 2월 23일에 그는 클라렌드에게 러시아가 조선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²³⁾ 보우링이 러시아의 조선 진출 가능성을 희박하게 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낮게 평가한 보우링의 이러한 관점은 영

21) Clarendon to Bowring, No.176, November 25, 1854, 『近代韓國外交文書』, p. 821, “so little was known concerning that country, its produce and inhabitants, that it was difficult to form any opinion as to the advantages to be derived from such a Treaty as he contemplated, but that it could scarcely be anticipated that it would lead to any very important results.”

22) 위 사료, p. 821.

23) 위 사료, p. 821, “Sir J. Bowring admitted that he did not see any probability at that moment of his being able to employ them for the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British interests unless Corea should become a field where Russian ambition might seek development”

국과 프랑스 연합함대가 재차 캄차카를 침략하는 1855년 5월 말에도 계속되었다.

1854년 8월 캄차카 원정이 실패하자, 영국은 다시 함대 파견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이듬해인 1855년 5월 31일 영국과 프랑스 연합함대는 캄차카의 페트로파블로프스크로 침략하였다.²⁴⁾ 영국과 프랑스 연합함대가 캄차카로 떠날 무렵인 1855년 5월 26일에 보우링은 클라렌덴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본인은 천주교 선교사들로부터 러시아 정부가 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조선 당국자와 회담을 개시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본인은 추가적인 세세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만, 본인은 일반적으로 그 협상들이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였다고 들었습니다.²⁵⁾

보우링이 처음 조선의 개항을 언급한 시점이 영국과 프랑스 함대가 캄차카 반도를 침략했던 1854년 8월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855년 5월 원정 당시에도 보우링이 조선의 문호개방을 언급했을 수도 있다. 더욱이 1855년 2월에 러시아와 일본이 화친조약을 체결한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조선과 러시아가 수교협상을 개시하였다는 정보 자체는 러시아의 남하와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가 조선과 수호통상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였다는 점에 방점을 찍으면서,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낮게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보우

24) 최문형(2007), pp. 86-91.

25) Bowring to Clarendon, No.190, May 26, 1855, FO 17/230. "I am informed by the Catholic Missionaries that the Russian Government has opened communications with the Korean Authorities, with a view to the obtaining a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I will endeavour to ascertain further particulars, but have only heard, generally, that the negotiations have hitherto led to no result."

링은 클라렌드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조선과 조약 체결을 위한 전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경계하였을까? 그는 조선과 조약을 체결해야 하는 목적으로 ‘영국의 이익 보호와 증진’을 꼽았다. ‘증진’의 관점에서만 보면, 조선의 개항은 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우링이 제시한 목적에 부합해 보인다. 하지만 보우링은 ‘보호’를 함께 언급하였다.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조선은 영국이 무역을 실시하는 지역이 아니기에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즉 ‘영국의 이익 보호와 증진’의 대상에 조선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영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지역은 바로 중국이었다. 당시 영국은 남경조약의 개정을 통해서 중국 시장의 개방을 양쯔강 이북까지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청국의 거부로 조약 개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조약의 개정을 통해서 시장의 증진을 시도하였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보우링은 러시아가 조선에 독점적으로 진출할 경우 궁극적으로 청국에서 영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1854년 보우링은 러시아의 원동진출과 크림전쟁의 여파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과정에서 조선의 문호개방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보우링이 조선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곳은 주목을 요한다. 바로 천주교 선교사들이었다. 아직 베이징에 공사관이 설치되기 이전이고, 개항장이 양쯔강 이남에 집중된 현실을 보노라면, 동아시아 주재 영국외교관들은 조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제한적이었다. 이를 대신해 준 세력이 19세기 초부터 조선에 밀입국해서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던 프랑스외방전교회 소속 천주교 선교사들이었던 것이다.²⁶⁾

26) 프랑스 선교사들은 본부에 지속적으로 조선 정부의 천주교 탄압을 알렸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 내부 정세를 함께 전달하였다. 부정확한 정보도 많았지만, 이들이 보내는 보고서는 조선에 대한 최신정보였다. 그렇다면 왜 프랑스 선교사들은 영국

2.2. 조·러 국경 접경과 웨이드의 대조선 문호개방 제안

1865년 11월 주청 영국공사 웨이드(T. F. Wade)는 한 통의 보고서를 받았다. 발신자는 영국 상인 모리슨(James Morrison)이었다.²⁷⁾ 모리슨은 그해 10월 조선을 탐사한 결과를 웨이드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선인들이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사항이었다. 모리슨은 조선 서해안에서 만난 조선인들이 외국인들에게 적대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서양 선박이 출현했을 당시 이를 보고하지 않는 지방관을 처벌하고, 교제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내부 통제를 강화하였던 조선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 연장선에서 모리슨은 조선인들이 영국 선박에 물자 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함께 기술하기도 하였다.

모리슨은 적대적인 조선인만을 만나지는 않았다. 모리슨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조선인도 있었다. 그들은 바로 밀무역이 횡행하는 지역에 사는 조선인들이었다. 모리슨은 친절한 조선인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

측에 조선과 러시아의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고 했을까? 1855년은 페레올 신부의 사망 이후 2년 만에 베르뇌 주교가 조선으로 입국한 해이다. 페레올 주교는 기해박해, 병오박해 등 조선 정부의 탄압 속에서 천주교 교세 확장에 힘을 썼다. 그리고 베르뇌 주교는 1855년에 조선에 입국해서 충청도 배론에 신학교를 세웠다. 즉 파리의방전교회의 입장에서는 조선 내 선교를 확장하는 시기였으며, 조선 정부의 탄압을 막기 위해서 크림전쟁으로 격화된 영국, 프랑스와 러시아의 관계를 이용해서 조선과 러시아의 조약 체결 가능성을 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1855년 7-9월에 조선 해안을 탐사한 프랑스 함대 계령 제독은 러시아보다 먼저 조선을 정복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조선과 러시아의 교섭은 프랑스가 지어낸 허구인가? 사실 선교사들이 지칭한 교섭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기에 진실인지 허구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1854년 4-5월에 전함 팔라다호가 거문도를 비롯해서 동해안을 측량하면서 조선인과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 팔라다호의 출현을 두고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과 러시아가 조약 체결을 위해서 교섭을 진행했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여기서 소략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27) Wade to FO, No.255, November 2, 1865, 『近代韓國外交文書』, pp. 821-822.

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그는 조선에서 밀무역이 행해지는 모습을 서술하였다. 모리슨은 조선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이 교역을 희망한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영국이 조선과의 무역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모리슨은 밀무역 행위를 통해서만 조선에서 무역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밀무역에서 행해지는 밀수품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주요 밀수입품목으로는 조선인이 선호하는 서츠와 무명을 비롯한 모직물, 아편, 설탕, 견직물이었다. 한편 주요 밀수출품목으로는 홍삼, 소금, 금, 철, 목재, 가죽, 종이, 목화 그리고 쌀이었다. 아울러 모리슨은 조선에 천연 송진이 풍부하지만 무역품목에서 제외되었으며, 면화는 중국인들에 의해서 매우 유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모리슨의 교역 보고는 10년 전 보우링이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보다 자세하였다. 특히 모리슨은 밀무역의 존재를 밝힘으로써, 조선과 활발한 교역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상업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모리슨의 보고서는 조선을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하기 위해 영국외무부를 설득하려는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하지만 웨이드는 외무부에 “조선과 상업관계를 맺는 것이 영국 무역에 이익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²⁸⁾ 사실상 모리슨의 보고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²⁹⁾ 이에 그는 외무부에 적극적으로 조선의 개항을 제안하지 않았다.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조선의 문호개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28) 위 사료, p. 822.

29) 그 후 모리슨은 1866년 2월에 오페르트(Oppert, Ernest Jacob)와 함께 조선 서해안 일대를 다니면서 통상을 요구하였다. 그때 그가 조선 측에 주장한 바는 청국 총리 각국사무아문을 통해서 영국과 통상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다(『고종실록』 고종 3년 11월 5일). 이는 모리슨이 웨이드를 설득해서 영국 정부가 직접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도록 유도했던 시도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웨이드가 민감하게 반응한 사안이 있었다. 바로 러시아의 조선 진출설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러시아가 조선 북동쪽 해안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소식을 매우 질투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다.

만약 (러시아의 진출을 - 인용자) 좌절시키기 위한 어떠한 계획을 착수한다면, (조선의 - 인용자) 해안을 개방하는 것이 그들(러시아 - 인용자)을 가장 확실히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중략)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떠한 교류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집착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는 동아시아 국가를 원하는 유럽인들은 없으며 서구 열강은 그 국가를 무력으로 전복시킬 구실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코친차이나에서 보았듯이, (조선이 - 인용자) 어떤 한 국가에 의해 전복된다면 그 불쾌감을 주는 국가(조선 - 인용자)는 그 나라에 의해 지배당하거나 분할될 것입니다. 만약 조선왕조가 이러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알고 있다면, 즉시 모든 국가들에게 무역을 개시하자고 요청해야 합니다.³⁰⁾

웨이드는 조선이 러시아의 독점적 영향권 아래 놓이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프랑스가 청국의 속방 베트남을 단독으로 침략, 개국을 관철함으로써 사실상 식민지화한 예를 언급하면서, 특정 국가가 조선에 독점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조선 역시 특정 국가의 식민지가 될

30) 위 사료, p. 822, "if there were on foot any designs worth frustration, they would be most surely frustrated by the opening of the coast, …… There is no European who desires to see Eastern nations preserve their independence that does not deplore their adherence to a system of non intercourse, commercial or political, which it rests with any Western Power that may find a pretext for resorting to force to subvert, and the subversion of which by any single Power would probably be followed, as we have seen in Cochin China, by the subjugation or repartition of the offending State. If the Kingdom of Corea understood its own interests, it would at once invite all foreign nations to trade with it."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웨이드는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조선을 침략할 가능성이 큰 국가는 바로 러시아였다. 그러기에 그는 러시아가 조선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구 열강이 공동으로 조선을 개항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던 것이다.³¹⁾

그렇다면 프랑스 선교사들이 언급한 러시아의 조선 진출설은 사실일까? 러시아의 라이벌인 영국을 자극하기 위함은 아닐까? 이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청국의 국경이 정해지는 과정과 더불어 조선에서 천주교 문제가 러시아의 진출과 얽힌 측면,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60년 11월 러시아는 청국과 베이징조약을 체결하였다.³²⁾ 이 조약은

31) 위 보고에서 주목할 점은 조선 왕조가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웨이드가 예견한 대목이다. 얼핏 보면 쇄국정책을 고수하는 조선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웨이드는 쇄국정책에 대한 비판만을 하지 않았다. 그는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없는 국가로 조선을 상정하고, 조선이 외세의 침략을 막는 유일한 길로 서구를 향해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웨이드는 조선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서 문호개방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초점은 러시아의 독점적 조선 진출을 막는 데에 있었으며, 문호개방을 통해서 조선이 유럽 열강과 수교관계를 맺는다면 러시아의 독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웨이드는 문호개방의 어떠한 요소가 조선에서 러시아의 독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을까? 이 점에 관해서 웨이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 다만 동아시아 조약체제에서 간접적으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영국이 주도한 동아시아 조약체제는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운영되었다. 저울의 관세율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조약체제를 이끄는 또 하나의 내용은 최혜국 대우 규정이었다. 최혜국 대우 규정은 타 열강이 획득한 이권을 균점할 수 있는 권리로, 청국과 일본의 관점에서는 모든 조약 체결국에게 이권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이었다. 하지만 서구 열강의 입장에서 볼 때, 최혜국대우 규정은 특정 국가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게 이익의 균점을 보장한 것이다. 그러기에 웨이드는 조약을 통해서 조선을 모든 국가의 이익이 균점되는 지역으로 만듦으로써, 러시아의 독점적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32) 러시아와 청국의 베이징조약 체결과 이에 따른 조선과 러시아의 점령 과정, 그에 따라 러시아가 조선에 육로통상을 요구한 과정에 대해서는 한동훈(2017), 『19세기 말 조·러 접경에 대한 조·청의 ‘空曠地’ 논리 대두와 의미』, 『大東文化研究』 97,

러시아가 베이징을 점령한 영국·프랑스와 청국을 조정해 준 것에 따른 결과였다. 그래서 러시아는 2년 전 아이훈조약에서 러·청 양국의 공동관리지역으로 두었던 연해주를 영토로 편입할 수 있었으며, 다음 해 흥개호계약(興凱湖界約)을 통해서 연해주 지역에 8개의 목패를 설치함으로써, 러시아와 청국은 연해주 일대의 국경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 청국 관리가 경흥부의 사초봉(沙草峰)에 목패의 하나인 토자비(土字碑)를 설치하면서 조선과 러시아는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러시아와 조선이 국경을 접하게 되면서 조선 정부는 러시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³³⁾ 1861년에 복명한 연행사절단은 베이징을 공격한 국가로 영국, 프랑스와 함께 러시아를 지목하였으며, 이들 국가가 베이징을 점령한 기세를 몰아서 조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보고하였다. 1864년 2월에는 러시아인 5명이 경흥 부사에게 통상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홍선대원군이 대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선택한 안이 프랑스 선교사를 통한 프랑스와의 관계 모색이었다. 홍선대원군은 인편을 통해서 베르뇌 주교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는 대가로 러시아에 대한 방비책을 문의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1860년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베이징 점령으로 초래된 러시아와 청국의 베이징조약은 조선과 러시아의 접경을 가져왔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육로 통상 요구에 직면함으로써 조선 내부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홍선대원군은 대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프랑스와의 관계 증진과 천주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조치를 모색하였던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pp. 199-200 참조.

33) 러시아와의 국경 접경에 따른 조선 내 대러 위기의식 고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홍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프랑스와 접촉하려는 시도,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들의 대리인식에 관해서는 연갑수(2001),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책 연구』, 서울대출판부, pp. 75-97 참조.

이상과 같이 영국외교관들은 러시아의 원동진출과 크림전쟁이 동아시아로 확대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러시아가 조선을 독점적으로 진출하는 경우, 동아시아에서 영국의 상업적 이익에 손해를 끼친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영국외교관들은 서구 열강이 참여하는 조선의 문호개방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영국이 조선 관련 정보를 주로 확보하는 루트는 프랑스 선교사였다. 그들은 19세기 초반부터 조선으로 밀입국해서 선교활동을 하였기에 그 어떤 서구 세력보다 조선에 대한 정보가 많았다. 그런데 그들은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였다. 그렇기에 영국 측에 전달되는 정보, 소문들은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영국의 간섭정책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진출이 구체화될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조선 진출이 현실성이 없다면, 굳이 영국은 간섭할 이유가 없었다. 동아시아에서 영국의 상업적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로 영국은 러시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조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영국이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사안이 있었다. 바로 영국 선박의 안전보장이었다. 여기에는 풍랑에 따른 표류 선박에 대한 구조와 식량 및 식수 조달 등의 인도적 측면도 있었다. 그런데 1858년 텐진조약, 1860년 베이징조약을 통해서 영국은 무역의 범위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1854년 영일화친조약과 1858년 영일통상조약을 통해서 그 범위를 일본으로까지 넓혔다. 그 과정에서 영국 선박의 항해는 서해안뿐만 아니라 남해를 거쳐서 동해안까지 이르렀다. 그 어느 때보다 영국으로서는 조선 해안에 대한 측량이 시급하였던 것이다.

3. 영국의 조선 국왕 통치권 인식과 자주·독립 인정

1865년 웨이드는 청국 정부가 조선 정부에게 난파선의 보호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본인은 청 제국이 (조선 정부가 난파선의 구출을 거절하는 - 인용자) 이 같은 무례함이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중략) 그러나 비록 외국의 상업을 금지할 목적으로 (청국의 - 인용자) 충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본인은 이와 같은 행동(조선의 난파선 구출 - 인용자)으로 인해서 해상 국가를 모욕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청국에게 요청합니다.³⁴⁾

웨이드가 난파선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앞에서 소개한 1865년 모리슨의 보고에 기인한 것이었다. 모리슨은 조선을 문호개방 시켜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조선 정부가 난파선 구출을 시행하지 않는 점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모리슨의 이 같은 발언은 주의를 요한다. 조선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난파선 구출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³⁵⁾ 그렇기에 모리슨이 난파선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이를 빌미로 조선과 조약 체결을 정부에 압박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웨이드의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조선과 청국의 관계였다. 웨이드는 청국 정부를 통한다면 조선 정부가 난파선을 구출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전통적인 조·청 관계를 통해서 조선 정부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

34) Wade to FO, No.255, November 2, 1865, 『近代韓國外交文書』, pp. 822-823. “I trust that the Imperial Government may be enabled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uch acts of discourtesy. ……But ever if it be so ill advised as still to entertain its interdict on foreign commerce, it should at least be careful not to affront a Naval Power by conduct such as that to which I have requested your Imperial Highness’ attention.”

35) 金淇烈(1983), pp. 56-57.

이다. 1866년에는 웨이드의 후임 공사직을 수행한 올콕(John Rutherford Alcock)은 해군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청국 총리아문의 공친왕(恭親王)에게 영국 선박의 조선 행 및 해안 측량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³⁶⁾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본다면 영국은 조선을 청국의 속방으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봐도 무방해 보인다. 그런데 웨이드가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시한 카드는 조선의 문호개방, 즉 수호통상조약 체결이었다.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왜 청국의 안보 우산에 조선을 편입시키기 보다는 독립국의 관점에서 조선의 문호개방을 구상했던 것일까? 베이징을 점령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영국은 청국의 국방력과 외교력으로는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을 수 있다. 아니면 태평천국의 난으로 청국이 조선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파악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웨이드가 주목한 바는 청국의 내우외환이 아니었다. 그는 전통적인 조·청 관계 속에서 조선 국왕의 통치권에 주목하였다. 실제 그는 청국을 통해서 조선이 난파선 구출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의 통치권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청 황제가 황궁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조선 국왕이 (청국 황제의 - 인용자) 종속적 지위에 있는 것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청국 관료들은 항상 조선을 언급할 때면 조심스럽게 조선은 스스로 통치하며 청국은 조선의 내정·경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합니다.³⁷⁾

36) 金淇烈(1983), pp. 58-59.

37) 위 사료, p. 823, "he had not come straight to the point with His Highness, because, although the vassalage of the King or Corea was complete, the Emperor of China had no resident at his Court, and Chinese Ministers were always careful to proclaim, when Corea was alluded to, that she governed herself, and that China did [not?] interfere in her internal economy"

웨이드는 전통적인 중화질서에서 조선과 청국의 속방관계를 부정하지 않았다. 청 황제의 부재, 즉 1860년 영불 연합군의 베이징 함락으로 함풍제가 열하로 피난을 떠났을 때도 조선과 청국의 속방관계가 변함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드는 청국 관료의 말을 인용하면서 조선의 자주를 지적하였다. 좁게는 조선 정부가 청국의 난파선 보호 권유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 것이자, 넓게는 조선이 의례상 청국의 속방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국가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는 비단 웨이드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1866년 8월에 영국외무부는 올콕에게 조선과의 조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³⁸⁾ 이에 대해 올콕은 조선과의 협상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³⁹⁾ 올콕이 조선과의 협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병인양요 직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선이 서구에 대해 강경하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듯하다. 올콕의 부정적 견해도 불구하고 영국외무부는 올콕에게 조선 국왕과 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하였다.⁴⁰⁾ 조선 국왕과의 직접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한 것은 바로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조치와 다름없었다.

병인양요는 영국에게 조선의 독립 여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 병인양요는 조선 정부의 천주교 탄압, 특히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프랑스가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병인양요 직전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 있었다. 바로 조·청 속방관계 속에서 청국이 조선 정부의 천주교 탄압을 중지시키고, 조선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의 여부였다. 이에 대한 공친왕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38) FO to Alcock, August 9, 1866, 『近代韓國外交文書』, p. 824.

39) Alcock to FO, October 13, 1866, 『近代韓國外交文書』, p. 824.

40) FO to Alcock, January 23, 1867, 『近代韓國外交文書』, p. 824.

비록 조선은 청국의 속방이지만, 조선은 청국의 연호를 사용한 국가이자 연례적으로 조공사절단을 파견한 국가 이상은 결코 아닙니다. (중략);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청국이 조선을 강요할 수 없는 문제이기때, 선교와 관련해서 조선 정부에 공식적으로 서신을 보내는 책임을 청국이 떠맡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조선 해안에 조사선을 파견하려는 영국 정부의 의도와 관련해서 총리아문이 조선 정부에 서신을 보내려는 그 때의 일보다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⁴¹⁾

공친왕은 조선과 청국의 의례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결코 조선의 내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나아가 공친왕은 청국이 조선의 대외정책에 관여하는 것도 역시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공친왕의 발언을 두고 청국이 조선과 프랑스 문제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 문제에 회피하려는 청국의 견해는 영국으로 하여금 조선이 내치와 외교를 자주적으로 실행하는 독립국이라는 관념을 강화시켜주기에 충분하였다.

1866년 8월 상해 주재 영국영사 윈체스터(Winchester)는 조선의 독립 여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조선은 상업보다 지리적, 정치적으로 더욱 중요합니다. (중략) 조선은 류큐와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강대국 청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으며, 몇몇 사례를 따르자면 조선은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독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⁴²⁾

41) Alcock to FO, No. 129, July 23, 1866, 『近代韓國外交文書』, p. 823, “although Korea was a dependence [of China], she had never been so otherwise that as a nation accepting the Calendar of China, and periodically bringing tribute; that her adoption of Christianity being a question in which China, consequently, could not constrain her, it would not be possible for China to take on herself to write officially to the Korea respecting the missionaries……it would at that moment be more difficult than ever for the Yamèn of Foreign Affairs to write to Korea regarding the intention of the British Government to send a surveying vessel to her coasts.”

윈체스터는 조선이 류큐와 마찬가지로 주변 강대국 청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국가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조선이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보았다. 이어서 그는 조선을 완전하게 독립을 유지하는 국가로 규정하였다. 그가 어떠한 사례를 들어서 조선을 독립국으로 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조선을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였지만,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의 국제적으로 독립의 지위에 있음을 환기시켰던 것이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역시 조선이 내정을 자주적으로 시행한다는 사실을 영국에게 각인시켜주었다. 제너럴 셔먼호에는 영국인 목사이자 선교사였던 토마스(Robert Jermain Tomas)가 동승하였다. 그는 조선 관리들과 교섭에 임하면서 통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다가 토마스는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는 과정에서 조선 군민들의 공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베이징 외교가에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올콕은 토마스를 비롯해서 영국인 두 명이 탑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다만 올콕이 전해들은 이야기는 토마스 등이 조선에 생존해 있으며,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올콕은 청국 총리아문을 통해서 조선 정부에 사실 확인 및 생존자 송환을 요청하였다. 올콕의 요청에 총리아문은 생존자가 없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42) Winchester to FO, August 5, 1866, 『近代韓國外交文書』, p. 824, “Corea is of more geographical and political importance than commercial. Still, even in a trading point of view, its relations may ultimately prove considerable. …Corea, like Loo Chew, oscillates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who are its nearest neighbours, China and Japan, and manages, by a few compliances, to maintain a tolerably effective independence. On the north west coast the Chinese influence is felt, on the south west that of Japan.”

비록 조선은 청국의 속방이지만, 조선 정부는 독립적이며 조선 정부는 완전히 마음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청국은 결코 간섭하지 않습니다.⁴³⁾

총리아문의 이 같은 발언은 속방 조선에 대한 책임회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청국이 조선의 자유의지로 규정한 것 역시 내치에만 국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내치이기도 했지만, 외정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다. 즉 청국은 조선이 외정에서도 자주를 행하는 국가로 간주한다는 발언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이 실질적으로 자주를 행하는 국가라는 관점은 1854년 보우링도 이미 주목한 바가 있었다.

명목상 (조선은 ; 필자) 청국에 의존하는데, 이는 시암과 코친차이나에서 인식되어지는 경우와 매우 유사합니다. 조공사절단은 정기적으로 파견됩니다. 조공의 행위들이 때때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나 청 정부는 실제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조선 관리들의 관할권에 간섭하는 것은 결코 없어 보입니다. 조선 국왕의 권력이 너무나 절대적입니다.⁴⁴⁾

보우링은 조선에서 연례적으로 연행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례적인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

43) Alcock to FO, No.197, August 2, 1868, 『近代韓國外交文書』, p. 826, “although Korea was tributary to China, yet it was independent in its Government and entire master of its own actions, with which China never interfered.”

44) Bowring to FO, No.122, August 25, 1854, 『近代韓國外交文書』, pp. 820-821, “There is a nominal dependence upon China, very similar to that recognized by Siam and Cochin China. Tribute is regularly sent. Acts of submission are from time to time recorded: but the Chinese Government exercise no real authority, and seems never to interfere with the jurisdiction of Korean functionaries. The authority of the King is absolute.”

가 그는 청국이 조선에서 권력을 행사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조선의 통치권이 국왕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상과 같이 영국은 1868년 이전까지 조선을 청국의 속방이긴 하지만 내치와 외정에서 완전한 독립을 행사하는 국가로 이해하였다. 청국이 조선의 내치와 외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영국으로 하여금 조선이 실질적인 자주를 시행하며, 독립국으로 여기는데 충분하였던 것이다.

5. 맺음말

조선이 문호개방으로 마주한 세계는 영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한 공간이었다. 19세기 중반 영국은 무력으로 청국과 일본을 제압하고 불평등조약을 관철시켰다. 불평등조약을 토대로 영국은 동아시아에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상업적 이익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영국은 동아시아에 무력을 통한 압박만을 가하지 않았다. 영국은 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국내의 통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청국과 일본의 국경 및 변경에서 발생하는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방의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했다. 즉 조선이 만난 동아시아 세계는 영국의 헤게모니가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중반 영국이 대조선정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당시 조선을 둘러싼 대외정세를 확인하고, 나아가 조선이 문호개방을 통해 직면하였던 국제정세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854년부터 1868년까지 동아시아 주재 영국외교관들이 조선에 대한 문호개방을 모색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1854년 8월 홍콩 총독 보우링은 크림전쟁의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함대가 캄차카 반도를 공격하는 시점에 조선

의 개항을 제안하였다. 1860년 베이징조약을 계기로 러시아가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육로 통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웨이드는 조선의 문호개방을 주장하였다. 영국외교관들이 모색한 대조선 문호개방정책은 영·러 대결이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확대되고 국경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양상에서 나온 러시아 견제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영국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려는 데에는 걸림돌이 있었다. 조선과 청국은 전통적인 속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선과 청국 모두 그 관계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외교관들은 청국이 조선을 두고 내치와 외정을 자주한다고 밝히면서 병인양요 등의 조선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이에 영국은 조선을 사실상 자주를 행하는 독립국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영국은 왜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경계하였는가? 바로 러시아의 조선 진출이 동아시아에서 영국이 구축하고 확대하려고 한 상업상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영국은 간섭정책을 통해서 러시아의 조선 개입을 차단하고 동아시아에서 영국의 상업적 이익을 수호하려는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19세기 중반 영국외교관들은 러시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조선정책을 모색하였다. 그런데 이 당시 조선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획득한 국가는 프랑스였다. 프랑스 선교사는 19세기 초반부터 조선에 입국해서 비밀리에 선교활동을 하면서 조선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였다. 이에 영국은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축적해 갈 수 있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1868년 이후부터 1876년에 이르는 시기의 영국의 대조선 정책에 대해서는 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1868년부터 1876년은 한국근대국제관계사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서계문제로 촉발된 조일 갈등이 1875년 9월 윤요호 사건으로 격화되었다가 조일수호조규로 일단락되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

을 단행하였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세력들 간에 정한론의 시행을 두고 대립이 발생하였다. 조일 관계가 국내 정치세력의 갈등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비단 조일 관계에만 국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1871년 대만인들이 류큐인을 살해한 사건은 청·일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다가 1874년 일본의 대만침략으로 격화되었다. 그런데 동아시아 내부에서는 대만 침공 이후 일본이 조선으로 침략할 것이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 사할린 문제를 타결하고 조·러 국경지역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나아가 1875년 7월에는 일본이 러시아와 손잡고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주일 영국공사 파크스가 거문도 점령과 조선의 문호개방을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1868년 이후 동아시아 정세는 격변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기존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영국의 대조선정책 구상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1868년 이후 조일 갈등과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FO: Records created and inherited by the Foreign Office in UK.

FO 17: Foreign Office: Political and Other Departments: General Correspondence before 1906, China.

FO 405: Foreign Office: China and Taiwan Confidential Print.

FO 881: Foreign Office: Confidential Print (Numerical Series).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편(2013), 『近代韓國外交文書 5권 조영수호통상 조약』, 동북아역사재단.

金淇烈(1983), 「初期 韓英交涉의 展開過程」, 『史學志』 17, 1983, 단국사학회.

김용구(2001), 『세계관 충돌과 한말외교사, 1866~1882』 문학과 지성사, 2001.

김현수(2011), 『해리 S. 파크스: 대영제국의 동아시아 외교 주역』, 단국대 출판부, 2011.

_____(2008), 「주일영국공사 파크스의 외교활동, 1869~1874」, 『영국 연구』 19, 영국사학회.

_____(2003), 「영국 직업 외교관, 씨 해리 파크스(Sir Harry Parkes)의 동아시아 외교 활동, 1842~1885」, 『영국 연구』 9, 영국사학회.

_____(2001), 「19세기 영국 외교정책의 근원-캐닝 외상의 정치·경제·외교 관(觀)을 통해 본 대안의 삶」, 『현상과 인식』 25-1, 한국인문사회과학회.

_____(1994), 「영국의 외교정책-위대한 고립책(Splendid Isolation Policy)」, 『西洋史論』 43-1, 한국서양사학회.

연갑수(2005),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책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1.

이완중, 「러시아의 극동진출과 중-러 국경획정과정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4, 2005.

지오나비 아리기 · 비벌리 J. 실버 외 지음, 최홍주 옮김(2008), 『체계론으로 보는 세계사』, 모티브북.

崔文衡(1984), 「韓英修交와 그 歷史的 意義」, 『韓英修交100年史』, 韓國史研究協議會.

최문형(2007),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 침략』, 지식산업사.

- 한동훈(2017), 「19세기 말 조·러 접경에 대한 조·청의 ‘空曠地’ 논리 대두와 의미」, 『大東文化研究』 97,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 한승훈(2016), 「고립정책과 간섭정책의 이중주 - 조일수호조규에 대한 영국의 인식과 대응」, 『역사비평』 114, 역사문제연구소.
- _____ (2015), 「19세기 후반 朝鮮의 對英정책 연구(1874~1895)-조선의 均勢政策과 영국의 干涉政策의 관계 정립과 균열」,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홍용호(2008), 「19세기 후반 러시아 동아시아정책의 변화」, 『수교와 교섭의 시기 한러관계』, 선인, 2008.
- Jones, F. C. (1935), *Foreign diplomacy in Korea 1866-1894*, PhD. in Harvard University.

원고 접수일: 2017년 4월 7일
심사 완료일: 2017년 5월 11일
게재 확정일: 2017년 5월 13일

Abstract

The Beginning of Britain's Diplomatic Policies to
Open Korea in the 19mid Century:
With Regard to the Anglo-Russian Confrontation and
the Korea-Qing Tributary Relationship

Han, Seungho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true purpose behind Britain's diplomatic policies to open Korea, undertaken by British diplomats in East Asia in the mid-19th century. When the Crimean War broke out in 1854, the British-French combined fleet attacked the Russian military and naval base at Kamchatka; at the time, John Bowring, Governor of Hong Kong, made a proposal to the 4th Earl of Clarendon,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in UK, to open Korea, together with European powers. In 1865, Thomas Wade, the British Minister to China, made plans to open Korea in association with other European powers in order to deter Russian aggression towards Korea. The reason that British diplomats chose to open the doors of Korea was to protect British commercial interests in East Asia by blocking the exclusive entry of Russia. By undertaking the opening of Korea, in association with other European powers, they attempted to make

*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

Korea a place where shares of interests were equally divided. However, since Korea was known to be a vassal state of Qing, Britain was required to check whether or not Korea had its own sovereignty. British diplomats confirmed that although Korea was a vassal state, she had sole responsibility for internal and external affairs. Britain therefore began to regard Korea as an independent state.

